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제안이유

-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경기도 산림녹지과-16093, 2007. 1. 2)됨에 따라,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및 관리청을 명문화하고, 관리청은 5년마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11 조까지)
- 우리 시의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및 식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규정함.(안 제15조)
- 관리청이 적기에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16조)

-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청 이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의 승인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의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넣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어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가로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구축하고 있음.	
○ 건물신축시 가로수 이식, 훼손,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 가로수 보호대책은 있는지?		○ 건물신축시 동일수종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또한 원인자부담을 징수 하고 있음. 춘의동 양묘장에 임시로 이식 보관하고 있음.	
○ 중동대로 방음수벽 관리 대책은 있는지?		○ 주민과 방음수벽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방음수벽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앞으로 가지치기, 이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의결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제출년월일 : 2007. 6.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경기도 산림녹지과-16093, 2007. 1. 2)됨에 따라,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및 관리청을 명문화하고, 관리청은 5년마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11 조까지)
- 우리 시의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및 식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규정함.(안 제15조)
- 관리청이 적기에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 방법과 시기를 정함.(안 제16조)
-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

청 이외의 자가 시행할 경우의 승인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의 각종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첨부

- 부천시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이하 “가로수”라 한다)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市道)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②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 가로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청)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시의 가로수 관리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청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조성·관리시책 개발에 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산림조합장
2. 부천시의회 의원 1명
3. 가로수(녹지, 조경을 포함한다)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식재 기준

제12조(수종선정) ①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별 가로수의 수종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는 계획 단계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 제14조(규격 및 식재 기준) 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차도 및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가로수 규격 및 식재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기관등은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의 규격과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관리 등

- 제15조(보호시설물) ① 가로수의 보호틀 및 보호덮개(이하 “가로수 보호시설물”이라 한다)는 별표 5에 따라 도로 유형별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기관등은 별표 5에 준하여 별도로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마련하여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보호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5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협의할 때에는 관리청은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별표 6에서 정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법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승인 및 부담금)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맞지 아니하여 미승인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에게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 원인자부담금에는 예치금을 포함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관리청에서 금액을 산출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의 감독 및 준공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훼손신고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로수 및 가로수 보호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의 경우에는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 및 훼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복구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정기점검 등) ①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한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표 6에 따른 병해충 방제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시민참여 등) 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9에 따른 필요한 재료·물품·장비 및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의 교통사고 예방조치
2. 가로수를 흔드는 행위,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보고) ①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관리)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노선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집 중 관 리 대 상 가 로 수(제2조제2항 관련)

집 중 관 리 대 상 가 로 수	도 로 명	가로수 관리청
상2동 호수공원(인천시계)~작동터널(서울시계) 구간의 가로수	계남큰길	원미구청장 오정구청장
대장동 굴포천하수처리장~상1동 송내역지하도 (인천시계) 구간의 가로수	중동대로	원미구청장 오정구청장
송내동 사단사거리(인천시계)~역곡동 유한대학 (서울시계) 시계) 구간의 가로수	경 인 로	소사구청장
오정동 서해주유소(인천시계)~고강본동(서울시계) 구간의 가로수	오정큰길	오정구청장

[별표 2]

가로수의 관리청(제3조 관련)

도 로 의 종 류	관리청	비 고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구청장	「도로법 시행령」 제11조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구청장	

「주」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함.

[별표 3]

주요도로별 가로수 수종(제12조제2항 관련)

주요도로명 [구간]	식재수종
계남큰길 [상2동 호수공원(인천시계)~작동터널(서울시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아
중동대로 [대장동 굴포천하수처리장~상1동 송내역지하도(인천시계)]	버즘나무, 느티나무
수주로 (고강동~역곡역)	느티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오정큰길 [오정동 서해주유소(인천시계)~고강본동(서울시계)]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회화나무, 단풍나무

[별표 4]

가로수 규격 및 식재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가로수 규격	가로수 식재기준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8cm 이상, 근원경 15cm 이상	병렬다층식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8cm 이상, 근원경 15cm 이상	병렬식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5cm 이상, 근원경 12cm 이상	다층식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12cm 이상, 근원경 10cm 이상	단열단층식

[별표 5]

가로수 보호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5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주」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가능함.

[별표 6]

가로수 병해충 방제법(제16조 관련)

병해충 종류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 부화 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소각 · 디프제 살포	· 1화기 : 6월 상순 ·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 가지를 절단·소각 · 싸이프린액제·파프유제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제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 피해 가지를 절단·소각 · 만코지수화제 살포	· 1화기 : 5월 초·중순 ·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느티나무	잎	· 알 덩어리를 채취·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 할로스린 1% 유제·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 살포 · 침투성 살충제를 나무에 주사	· 수관살포 : 5월 하순~6월 초순 ·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 나 무	잎	· 4월 이전에 알 덩어리를 채취·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응 애 류	벗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종류의 약을 연속적 사용하는 것을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종류의 약을 연속적 사용하는 것을 피함)	· 발생초기(수시)
각지벌레류	벗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 수프라사이드 유제·이미다크로프리트드액제 살포 (동일 종류의 약을 연속적 사용하는 것을 피함)	· 발생초기(수시)

「주」 살균제 및 살충제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며, 약의 사용량은 권장 농도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7조제5항 관련)

<p>피해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부담금) ⇒ 원상 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부담금) ⇒ 수목비의 2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가지 훼손 : 수관의 1/3 이상이 훼손된 경우 ·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피해의 경우(부담금) ⇒ 수목비의 10%+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p>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예치금) ⇒ 도급공사설계비(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예치금)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예치 · 제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부담금)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하였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 ·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집행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 	

[별표 8]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종류	신고보상금 지급액
10만원 미만	10,000원
10만원 ~ 50만원 미만	30,000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000원
100만원 이상	70,000원

[별표 9]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1. 물 주 기	급 수 차
2. 비료주기	비 료
3. 병해충 발생신고	열 매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부천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2003. 01. 15 조례 제191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나. 지방도, 시도, 구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5.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

터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과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부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부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식재 위치)

①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

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③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식재간격은 6미터 ~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 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②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③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8조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 (깎신 및 보식)

① 깎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깎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 (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병해충의 방제)

①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깎신·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⑥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형과 토양 보호)

①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4.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초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초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 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6조 (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제3항의 별표 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제2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제23조 (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4조 (보고)

① 관리청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년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천시조경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